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시행에 따른 안내말씀

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지난 해 10.1.부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 종전 34개 업종에서 아래와 같이 **귀금속·피부미용·웨딩관련·포장이사·관광숙박업·운전학원**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,

추가입종을 포함한 전체 44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**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**(‘13.10.1 前 개업자는 ’13.12.31까지 가입의무)해야 하고, 가맹점 미가입 시 **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%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맹점에 꼭 가입하시기 바라며,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※ ’13.10.01.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’13.12.31.까지 가입해야 함

〈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)〉

종 전 (34개 업종)	전문직	변호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감정평가사업,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
	보건업	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·한방병원, 일반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
	기타업종	교습학원, 예술학원, 골프장 운영업, 장례식장, 예식장, 부동산 중개, 일반유통주점, 무도유통주점, 산후조리원
추 가 (10개 업종)	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, 피부미용업,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,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(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),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,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, 의류임대업, 포장이사 운송업, 관광숙박업, 운전학원	

또한,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**‘14.6.30. 이전 거래는 전당 30만원 이상, ’14.7.1. 이후 거래는 전당 10만원 이상’**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,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적게 낸 세금이외에 **해당금액의 50% 과태료가 부과됨**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**발급의무금액 30만원 → 10만원 이상 확대는 ’14.1.1.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으며, ’14.7.1.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됨**

보다 자세한 **가맹점 가입방법,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은 뒷면을 참고**하시기 바라며, 귀하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

- **(가입방법)** 현금영수증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 공지사항 참조
 -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후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PC 발급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
 - 세미래콜센터 ☎126(②현금영수증) ARS를 이용하여 가입
- **(미가입시 불이익)**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× 1% 가산세 부과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

- **(발급방법)** 신용카드 단말기, 인터넷PC발급, ARS발급 방법 중 택일
- **(발급의무 기준금액)** 아래 거래기간별 전당 기준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

거래기간	2014.6.30 이전 거래분	2014.7.1 이후 거래분
기준금액	건당 30만원	건당 10만원

- 소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함
- 소비자와의 **가격할인 등을 이유**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**미발급에 해당**되므로 반드시 발급해야 함

*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거래금액의 20% 포상금 지급

- **(미발급시 불이익)** **미발급금액 × 50% 과태료 부과**(조세범처벌법 제15조)

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화

- **(부착의무)**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
'계산대나 계산대 근처, 사업장 출입문 입구' 등
소비자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
- **(미부착 시 불이익)**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
*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